

제 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거 창 군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년월일 : 2009. 11.
제 안 자 : 거창군수

## 1. 사 유

- 1970년 진주축후소 거창분실로 창설되어 2008. 10. 22일자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장비의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기상대 관측시설 및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2009년 1월 1일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개청식을 가졌으나, 사회 봉사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시행으로 보호관찰소 업무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고자 함
- 웰빙스포츠 메카인 거창스포츠파크에서 많은 군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인근에 소재한 양돈축사의 악취로 인해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쾌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양돈축사를 매입하여 레포츠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함
- 늘어나는 여가활동 시간과 스포츠를 즐기는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파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자재의 공급과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거창승강기산업벨리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단위사업으로 산·학·연·관 협력 체제가 되도록 승강기전문단지와 연계한 거창승강기 센터를 건립하여 신기술개발 촉진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거창 승강기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 입주 예정 기업에게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공시지가 시기표준액 사업비	비고
계		6건		56,950.41	2,140,168	
거창기상대 부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7번지의외 5필지	토지	10,000	156,251	사업비 : 600백만원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8번지의외 4필지	토지	3,420	119,495	사업비 : 300백만원
거창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건물/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의외 9필지	계	11,500.41	147,182	사업비 : 2,500백만원
			건물	1,011.41	12,033	
			토지	10,489	135,149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지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의외 7필지	토지	15,005	226,344	사업비 : 1,300백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거점APC내)	건물	495	1,450,000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의외 7필지	토지	16,530	40,896	사업비 : 500백만원

## 3.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공시지가	비고
계		1건		40,369	701,790	
정장리 일반공업 지역 공장용지	토지	거창읍 정장리 83번지의외 5필지	토지	40,369	701,790	

##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

## 5. 전경사진 및 조감도, 지적도 ⇨ “따로 붙임”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

회 계 명 일반회계

### ① 거창기상대 부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사자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b>10,000</b>	<b>156,251</b>				사업비 : 600백만원
1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7	658	6,383	2010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최찬도	
2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8	698	6,771			최찬도	
3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9	440	4,268			최찬도	
4	토지	거창읍 정장리 967-40	1,330	12,901			최찬민	
5	토지	거창읍 정장리 976-10	949	9,205			최찬도	
6	토지	거창읍 정장리 978-2	5,925	116,723			최찬민	

### ②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사자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b>3,420</b>	<b>119,495</b>				사업비 : 300백만원
1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8	626	36,183	2010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신축 부지	김상규	
2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27	1,329	25,783			김기선	
3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28	707	13,716			김기선	
4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34	62	3,584			이상수	
5	토지	거창읍 김천리 169-35	696	40,229			이상수	

### ③ 거창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사자가 /사기표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b>11,500.41</b>	<b>147,182</b>				사업비 : 2,500백만원		
1	건물	<b>소 계</b>	<b>1,011.41</b>	<b>12,033</b>	2010	쾌적한 레포츠 환경개선	김병수			
		거창읍 양평리 1161외 1필지	838.16	4,808						
		거창읍 양평리 1163-1	77.76	1,400						
		거창읍 양평리 1163-4	95.49	5,825						
2	토지	<b>소 계</b>	<b>10,489</b>	<b>135,149</b>					김병수	
		거창읍 양평리 1131-3	2,047	25,588						
		거창읍 양평리 1161	659	10,742						
		거창읍 양평리 1161-1	534	4,224						
		거창읍 양평리 1162-1	1,491	24,303						
		거창읍 양평리 1162-2	2,347	28,164						
		거창읍 양평리 1163-1	465	6,789						
		거창읍 양평리 1163-4	240	3,720						
		거창읍 양평리 1163-5	29	30						
거창읍 양평리 1174	1,270	14,986								
거창읍 양평리 1175	1,407	16,603								

④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8필지	15,005	226,344				사업비 : 1,300백만원
1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	1,693	29,966	2010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김진원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1	484	8,567			김진원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2	1,807	31,984			양기판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5-3	2,377	42,073			정숙자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6	2,397	29,963			양봉준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6-1	2,445	30,563			신영균	
	토지	거창읍 양평리 1126-2	2,802	39,228			이규식	
	토지	거창읍 양평리 1086	1,000	14,000			국(농수산부)	

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계	495	1,450,000	2010	신 축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일원 (거점APC내)	495 (지상2층)	1,450,000				

⑥ 거창승강기센터 신축 부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8필지	16,530	40,896				사업비 : 500백만원
1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4	391	3,910	2010년	거창승강기 센터 신축부지	김정연	
2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5	705	7,050			백병근	
3	토지	남상면 월평리 1546	70	700			박기태	
4	토지	남상면 월평리 1601-2	865	3,425			국 (농림수산부)	
5	토지	남상면 월평리 산179	7,530	18,373			차인환외 2인	
6	토지	남상면 월평리 산180	277	676			차해수	
7	토지	남상면 대산리 산132	6,660	6,727			이헌철	
8	토지	남상면 대산리 산184	32	35			국 (농림수산부)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대상 목록

### ①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6필지	40,369	701,790			
1	토지	거창읍 정장리 83번지	20,685	511,670	2010년	공장건립	거창군
2	토지	거창읍 정장리 71-6	217	3,298	“	“	거창군
3	토지	남상면 월평리 946번지	18,628	161,918	“	“	거창군
4	토지	거창읍 정장리 71-5	550	16,665	“	“	거창군
5	토지	거창읍 정장리 147-1	120	4,572	“	“	거창군
6	토지	거창읍 정장리 155	169	3,667	“	“	거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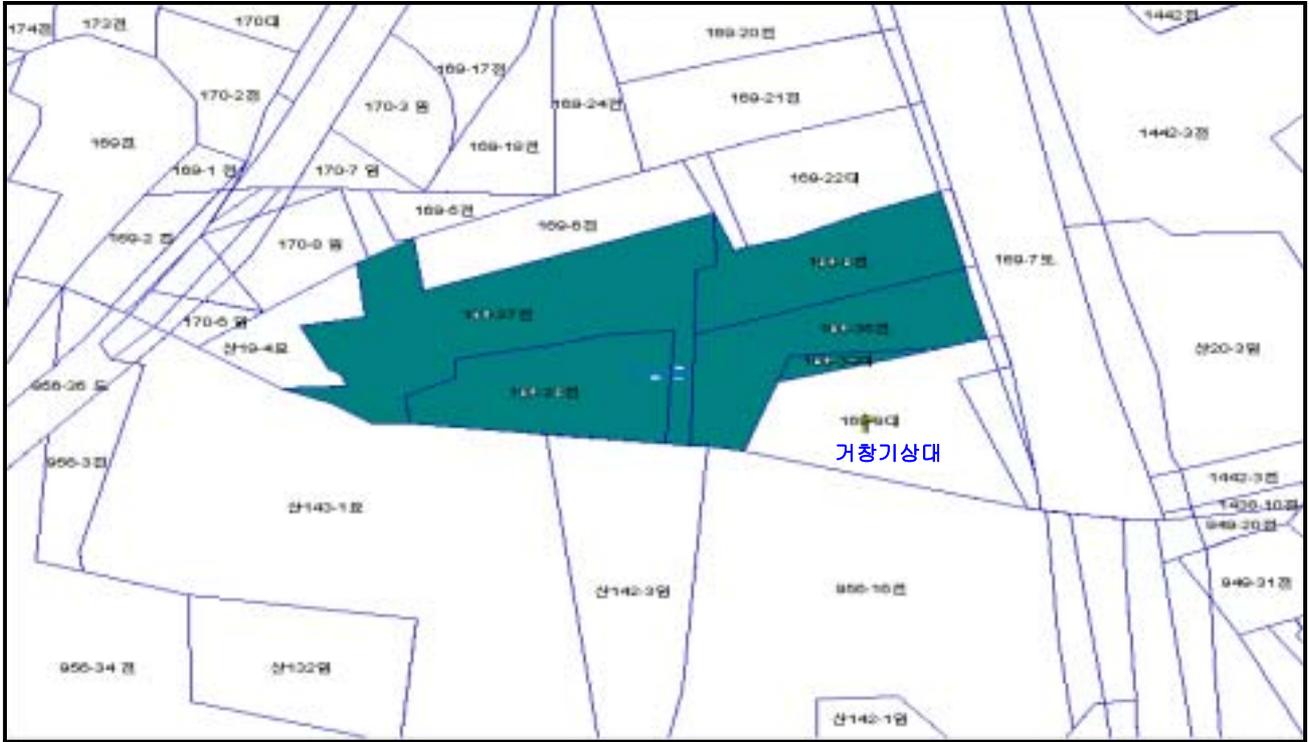
# 지적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 거창읍 정장리 967-7번지외 5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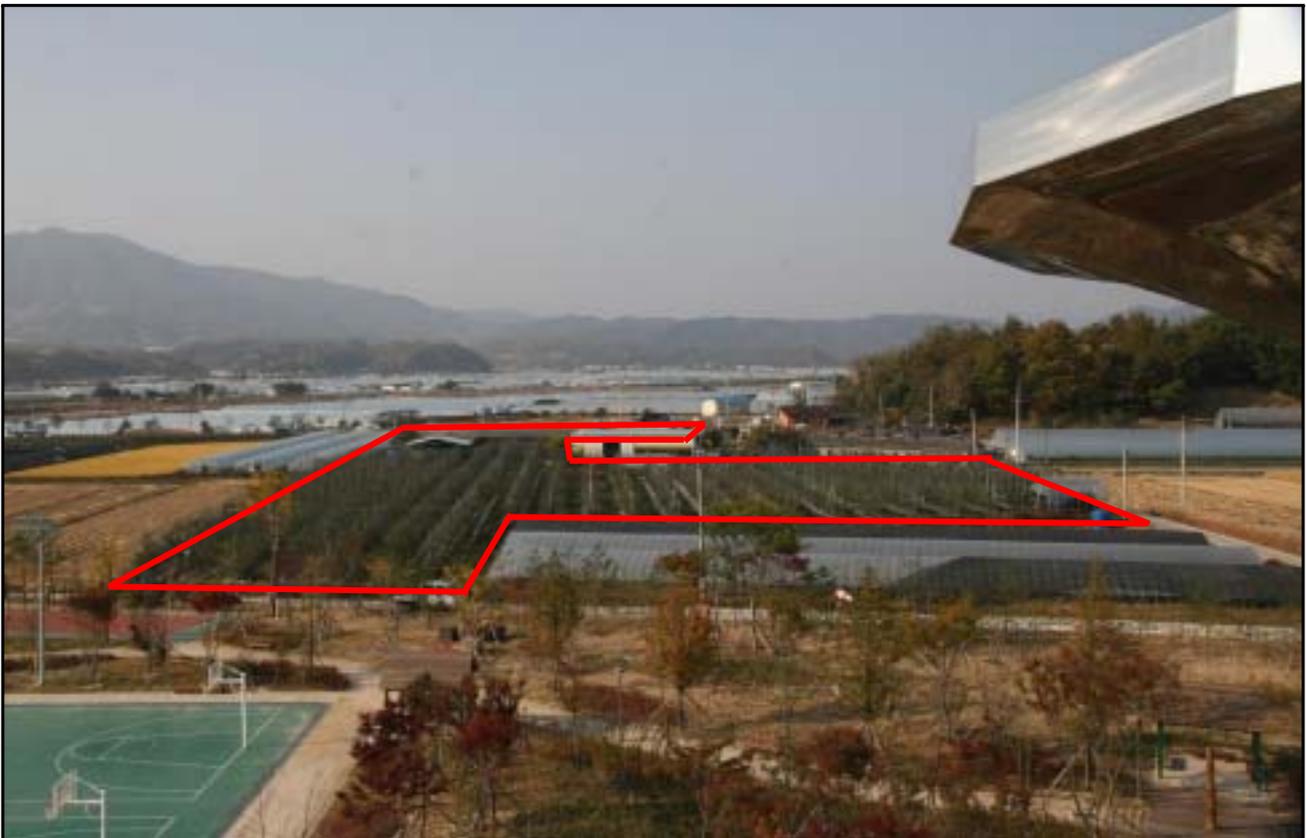
# 지적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169-8번지외 4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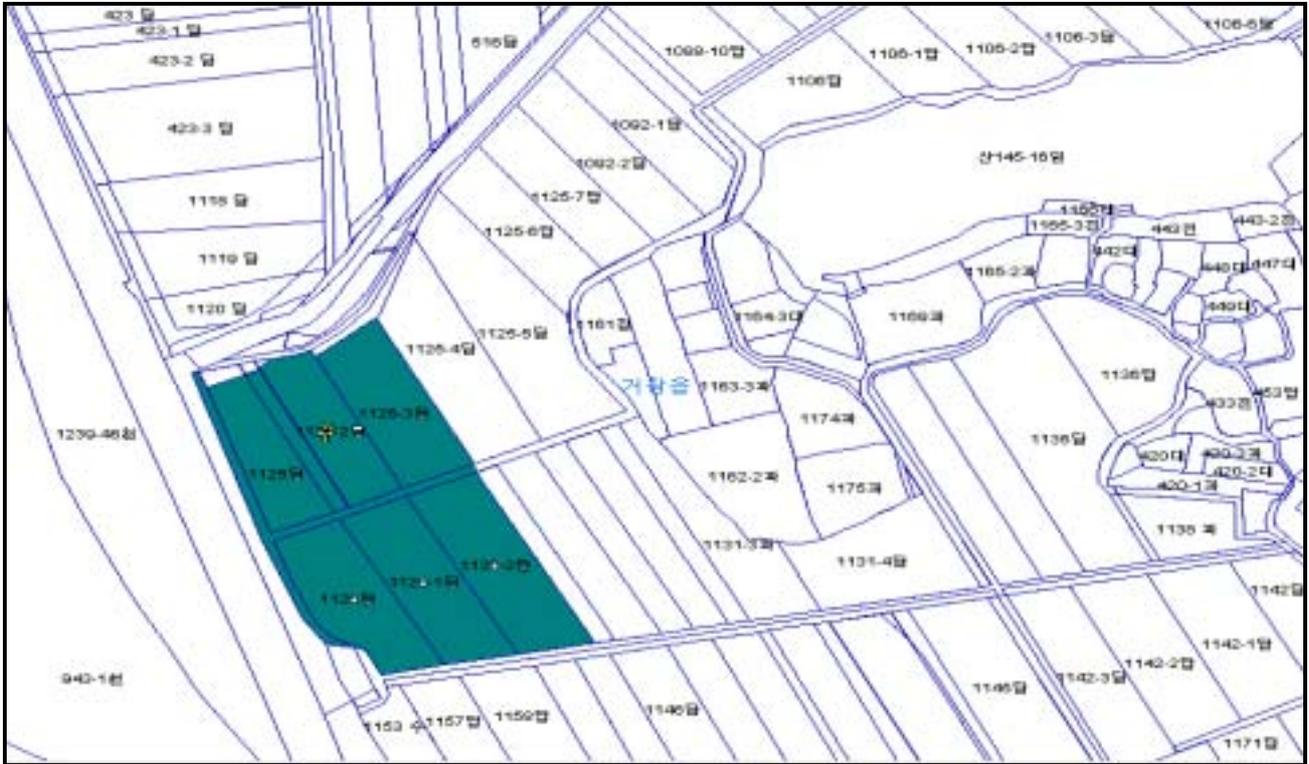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외 9필지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외 7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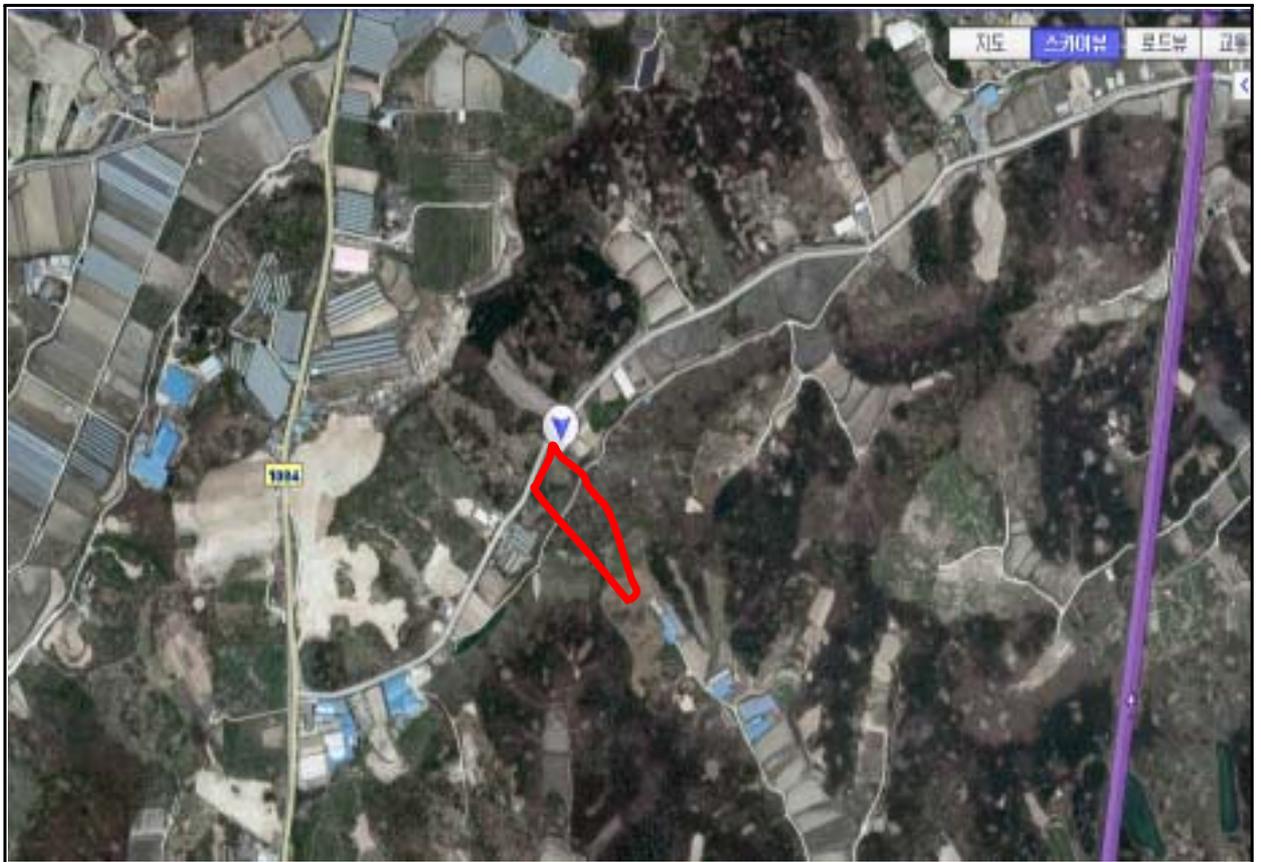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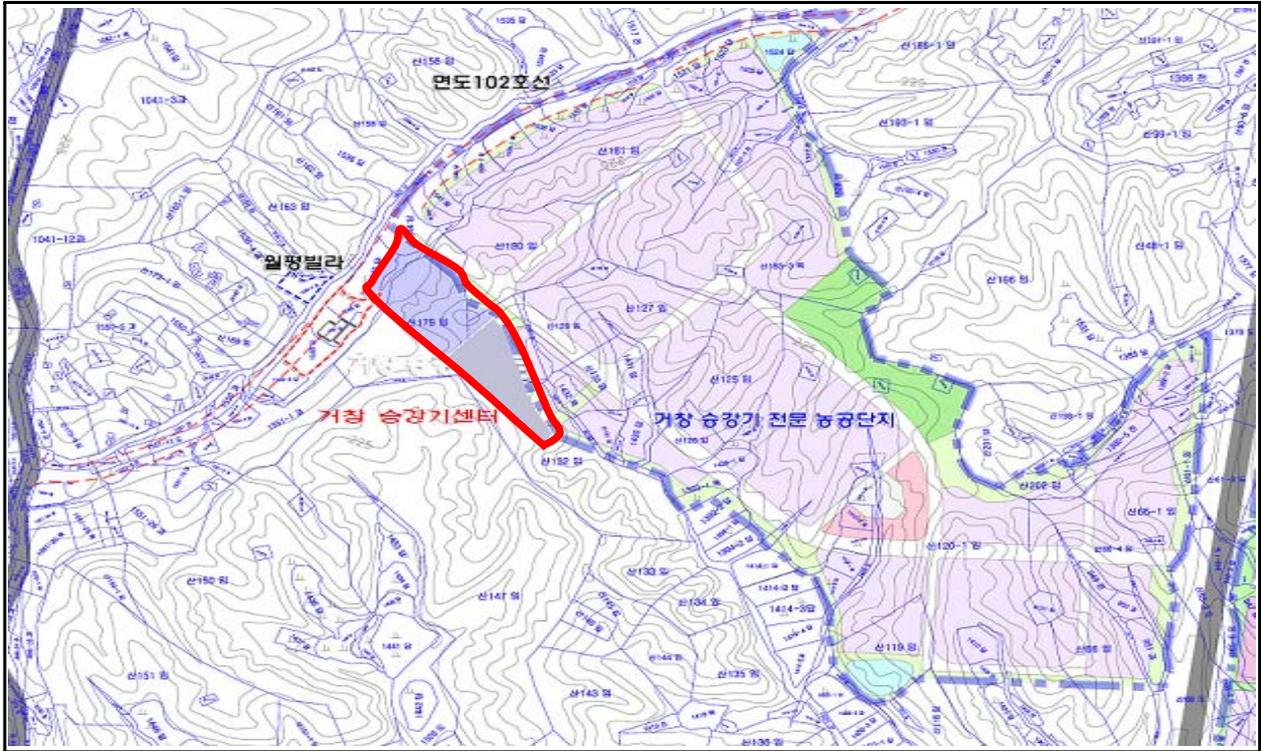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남상면 월평리 1544번지외 7필지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